

2003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4 - 68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3월 3월 일

제출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·처분 계획에 따른 2003년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·처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주·단기보호시설· 장애인공동생활 시설 건물 신축

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보호와 교육·자립능력 개발을 시키고 재활 서비스를 제공 사회·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·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할 건물을 신축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

○ 삼충단 제실 건립 위치 변경

2001. 4. 3 제1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시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산(삼충단 제실 건립) 취득 소재지(당초 상패동

901-3번지)를 부지 활용도가 월등하고 진·출입이 용이하며 도로 개설로 인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상패동 891번지로 변경하고자 함

○ **싸릿말 다용도회관 증축**

2003년도 보산동 주민과 신년인사회시 건의된사항으로 보산동 314-8번지 인근에는 연립, 다세대등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한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으나, 인근 주민들의 친목도모와 지역현안을 논의·협력 할 장소가 없어 주민복지 향상차원에서 다용도회관을 건립하고자 함.

○ **동안동민회관 신축**

경원선 복선 전철사업 제3공구에 편입된 동두천동 245-112번지 동안동민회관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규정에 의거 2002. 11.5 손실보상협약이 완료되어 건물을 명도하여야하나, 지역주민으로부터 대체재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의가 있어 동안동민회관을 현 부지에 신축하고자 함.

○ **구)소요동사무소 건물 매각**

상봉암동 16-2번지 구)소요동사무소 건물은 1998. 11. 30 행정동 통·폐합으로 용도폐지하여 동두천고용안정센터로 임대하였으나 2002. 12. 2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으로 확보하고자 함.

3. 변경주요내용

가. 취득예정 재산현황

○ 건물 신·증축

재 산 의 표 시			취 득 면 적 (㎡)	추 정 가 액 (천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 득 재 산 소 유 자
소재지	재산 형태	일단의 수 량 (㎡, 식)					
합 계		730.24	730.24	933,600			
상패동 54	건물	264	264	410,000	2003 하반기	주·단기보호 시설 신축	동두천시
상패동 891	건물	85	85	150,000	2003 하반기	향토유적 제9호 지정된 삼층단 제실 건립	동두천시
보산동 314-8	건물	150.24	150.24	145,000	2003 하반기	보산동 싸릿말 다용도회관 증축	동두천시
동두천동 245-112	건물	231	231	228,600	2003 하반기	전철사업구간 편입에 따른 건물 신축	동두천시

나. 매각예정 재산현황

재산구분	재산소재지	토지 및 건물		면 적 (㎡)	매각예정금액
		지목	구 조		
잡종재산	소 계			1,393.76	223,347,000
	상봉암동 16-2	대지		992	90,768,000
		건물	철근콘크리트조	401.76	132,579,000

4. 세부내용 및 관련자료

“붙임”